

별표1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1월 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금		
	사용구분(㎡)	㎡ 당 단가(원)	
		현 행	조 정
가 정 용	0~30이하	90	120
	30초과~50이하	240	280
	50초과	400	440
대중목욕탕용	0~500이하	110	130
	500초과~2000이하	130	160
	2000초과	150	180
업 무 용	0~50이하	150	180
	50초과~300이하	230	270
	300초과	250	300
영 업 용	0~30이하	90	120
	30초과~50이하	240	280
	50초과~100이하	400	440
	100초과~200이하	510	560
	200초과~1000이하	580	640
	1000초과	650	720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용요금 요율은 2003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6
------	-----

2003년 3월 23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 다. 회부일자 : 2003년 3월 3일
- 다. 상정일자 : 2003년 3월 18일(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제안설명자 :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 및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을 현 기구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재해대책본부의 조직변경(안 제2조제3항)
  - 총괄조정관 : 기획예산실장 → 경영기획실장
  - 통제관 : 건설국장 → 건설기획국장
  - 재해별주무과장 중 : 도로운영과장 → 도로관리과장

3. 검토의견(건설전문위원 안석수)

-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을 “기획예산실장”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통제관을 “건설국장”에서 “건설기획국장”으로, 설해관련 주무과장을 “도로운영과장”에서 “도로관리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과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른 후속절차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기획국장”으로, “도로운영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7
------	-----

2003년 3월 28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 다. 회부일자 : 2003년 3월 3일
- 다. 상정일자 : 2003년 3월 18일(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제안설명자 : 건설기획국장 김영길)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 및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라 직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하천법,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 수입기관 직명 변경(안 제3조제1항)
  - 한강관리사업소장 →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